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실용신안공보(Y1)

(51) Int. Cl.⁶
A01K 87/00

(45) 공고일자 1996년06월21일
(11) 공고번호 실1996-0005080

(21) 출원번호	실 1990-0012908	(65) 공개번호	실 1999-0000001
(22) 출원일자	1990년07월25일	(43) 공개일자	1999년01월01일
(62) 원출원	실용신안 실 1990-0011323 원출원일자 : 1990년08월27일 심사청구일자 1990년08월27일		
(30) 우선권주장	89-87797 1989년07월 25일 일본(JP)		
(73) 실용신안권자	시마노 고오교오 가부시끼가이샤 시마노 쇼오조오 일본국 오오사카후 사카이시 오이마쯔쥬오 3쥬오메 77		
(72) 고안자	하라다 다카후미 일본국 오오사카후 사카이시 미이께다이 3쥬오메 54-11 오까다 무네키 일본국 오오사카후 오오사까사야마시 이마꾸마쥬오 7쥬오메 198 반지 1 사 야마하이타운 비-612 미요우쥬오 세이지 일본국 오오사카후 사카이시 니와시로다이 2쥬오메 12-11 우쯔노 노부요시 일본국 오오사카후 사카이시 신히노오다이 4쥬오메 16-15 도꾸다 이사무 일본국 오오사카후 사카이시 미이께다이 1쥬오메 13-3		
(74) 대리인	장용식		

심사관 : 이영기 (책
자공보 제2347호)

(54) 낚시대

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낚시대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에 관한 낚시대의 실시예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측면도.

제2도는 제1도 중의 II-II선에 의한 단면도.

제3도 내지 제6도는 본 고안에 관한 낚시대의 다른 실시예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측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장대
- 2 : 낚시줄 가이드
- 3 : 팽출부
- 4 : 오목부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낚시줄을 가이드하는 낚시줄 가이드를 장대에 구비하는 낚시대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낚시대에 있어서는 낚시대 앞끝부분에 낚시줄을 걸어 고정하는 한편, 낚시대 뒷끝부분에 상기 낚시줄을 풀어내기 자유롭게 감기 수납하는 릴을 부착하고, 장대 중간부에서 상기 낚시줄을 가이드하기 위한 복수개의 낚시줄 가이드를 장대의 축방향에의 이동이 자유롭게 바깥에 끼우고 있다. 이 낚시줄 가이드는 낚시대 사용시에는 상기 장대 중간부의 소정위치에 끼워붙이기 유지되어 상기 낚시줄을 원활하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상기 낚시줄 가이드의 끼워붙이기 유지는, 예컨대 일본국 실공소 58-2222호 공보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장대의 중간부의 소정위치에 외면으로 테이퍼면이 붙은 소정 길이에 걸친 파이프를 바깥으로 끼우고 정지시켜서 소정길이에 걸친 팽출부를 형성하고, 이 팽출부에 상기 낚시줄 가이드를 밀착 상태로 바깥끼움함으로써 이루어져 있다. 또, 상기 낚시줄 가이드의 장대 주위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장대 중간부에 바깥끼움 고정된 파이프 외주면에 축방향으로 뻗어있는 다수의 널링가공홈을 새겨 설치하는 노력도 행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이 낚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낚시줄을 드리울 때나 고기를 끌어올릴 때 등에 있어서 적당한 힘이 발생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낚시대가 그 대략 전체길이에 걸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소재·형상 등이 선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종래의 낚시대에 있어서는 상기 팽출부 자체의 존재에 의해 그 존재부분의 강성이 국부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상기 힘이 국소적으로 불충분해진다. 따라서, 낚시대가 그 대략 전체길이에 걸쳐 원활하게 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고안은 이 같은 설정에 착안하여 창안된 것으로, 상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낚시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고안에 관한 낚시대의 특징구성은, 장대의 축방향에의 이동이 자유로운 낚시줄 가이드를 끼워붙이기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장대의 중간부에 팽출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팽출부 표면에 상기 장대의 축방향으로 교차하는 오목부를 설치한데에 있다.

또, 본 고안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상기 오목부를 나선형상, 또는 근접 다환형상으로 형성하여도 좋고, 또 상기 오목부를 나선형상 또는 근접 다환형상을 볼록부 사이에 형성하여도 좋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상기 팽출부 표면에 상기 장대의 축방향으로 교차하는 오목부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팽출부는 낚시대의 축방향에 대하여 번갈아 나타나는 상기 오목부의 존재에 의해 그 축방향에 대한 굽힘강성이 매우 작아진다. 따라서, 낚시대는 그 팽출부에 있어서 국소적으로 휘기 어려워지는 일도 없다.

게다가, 낚시대의 축방향에 대하여 번갈아 나타내는 상기 오목부 사이에 형성되는 볼록부에 의해 상기 낚시줄 가이드에 대한 끼워맞춤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낚시줄 가이드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끼워붙여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하면 낚시줄 가이드를 팽출부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끼워붙여 유지할 수 있으면서 그 대략 전체 길이에 걸쳐 원활하게 휘게 할 수 있는 낚시대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또, 장대에 있어서의 낚시줄 가이드의 끼워붙이기 유지부의 테이퍼도 여하에 따라서는(이 테이퍼도가 1/1000mm정도 보다 작은 경우는) 낚시줄 가이드가 강하게 압입 고정되어 물리므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본 고안에 의하면 상기 팽출부에 있어서의 오목부의 존재에 의해 상기 낚시줄 가이드에 대한 접촉면적이 다소 감소되기 때문에 그 낚시줄 가이드의 물림이 억제되는 효과도 있다.

이하, 본 고안의 실시예를 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제1도 및 제2도에 있어서, 1은 외주면에 적당한 테이퍼가 주어진 장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같은 장대(1)를 복수개 순차로 끼워 넣음으로써 낚시대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장대(1)에는 낚시줄 가이드(2)가 장대(1)의 축방향에의 이동이 자유롭게 장착되어 있으나, 이 낚시줄 가이드(2)를 끼워붙이기 유지하기 위하여 그 유지부(2a)를 바깥 끼우기로 죄어 붙일 수 있도록 상기 장대(1)의 중간부 적당한 위치에 소정길이에 걸친 팽출부(3)가 설치되어 있다. 또, 이 팽출부(3) 외주면에는 상기 낚시줄 가이드(2)의 장대(1)주위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방향으로 뻗어있는 다수의 널링가공홈(3a)이 새겨 설치되어 있다.

상기 팽출부(3)에 있어서의 낚시줄 가이드(2)의 유지부(2a)를 바깥 끼움시키는 부분에는 그 표면에 나선형상오목부(4)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낚시대에 있어서는 표면에 나선형상의 오목부(4)가 설치된 팽출부(3)를 장대(1)에 설치하고, 이 팽출부(3)로서 낚시줄 가이드(2)를 끼워붙여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팽출부(3)는 종래의 낚시줄 가이드 끼워붙이기 유지부분이 장대의 중간부를 소정길이에 걸쳐 팽출시킨 부분에 있어서 낚시대의 축방향에 대한 굽힘강성이 국부적으로 높아지는데 비해 상기 오목부(4)를 낚시대의 축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형성함으로써 국부적인 굽힘 강성의 중대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장대를 그 대략 전체 길이에 걸쳐 원활하게 휘게 할 수 있다.

상기 팽출부(3)의 표면에 설치할 낚시대의 축방향으로 교차하는 오목부는 제3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2개의 연속적인 나선형상 오목부(4)가 교차하는 일이 없도록 평행상태로 형성된 것이어도 좋다. 제4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2개의 연속적인 나선형상 오목부(4)가 상호 복수회 교차하는 상태로 형성된 것이어도 좋고, 또한 제5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각 나선형상 오목부(4)의 길이를 짧게 하여 축방향으로 다수개 가지런히 이 오목부(4)를 단속적으로 설치한 것이어도 좋다. 또,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의 널링가공홈은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새겨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상기 오목부(4)는 제6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장대(1) 중간의 낚시줄 가이드(2) 끼워붙이기 부분에 장대(1)의 축방향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낚시줄 가이드(2)를 끼워붙여 유지하기 위한 나선형상 볼록부(5)를 설치하여(가령 띠모양부재를 감아서 접촉함으로써 설치한다) 그 볼록부(5)끼리의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어도 좋고, 이러한 구성에 의해서도 상기 실시예와 같은 작용·효과를 가져온다.

상기와 같이 나선형상 오목부(4) 또는 볼록부(5)는 그 전체모양을 장대(1) 자체의 표면에 형성된 나선형

상 모양으로 유사하게 해 둠으로써 장대(1) 전체의 미관이 높아지고, 상품가치가 향상된다.

상기와 같이 상기 팽출부(3) 표면에 나선형상으로 설치한 오목부(4) 또는 상기 장대(1) 자체에 설치한 볼록부(5) 대신, 상기 팽출부(3) 표면에 다수의 환형상 오목부를 근접상태로 설치한 근접다환형상 오목부, 또는 상기 장대(1) 자체의 표면에 다수의 환형상 볼록부를 근접상태로 설치한 근접 환형상 볼록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하여도 상기 실시예와 같은 작용·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상기 실시예 중에서도 나선형상의 오목부(또는 볼록부)를 설치한 실시예와 근접다환형 오목부(또는 볼록부)를 설치한 실시예를 비교했을 경우, 후자쪽이 상기 오목부(또는 볼록부)에 의해 장대의 축방향으로 연속성이 끊기는데 비해 전자쪽은 상기 오목부(또는 볼록부)가 나선형상으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팽출부에 있어서의 재료강도에 대한 노치효과적인 영향이 적어져서 그 내구강도가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또,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항에 도면과의 대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호를 기입하지만 이 기입에 의해 본 고안은 첨부도면의 구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장대(1)의 축방향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낚싯줄 가이드(2)를 끼워붙여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장대(1)의 중간부에 팽출부(3)를 설치함과 동시에 상기 팽출부(3)의 낚싯줄 가이드 끼워붙임 부분에는 그 표면에 나선형상의 오목부(4)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싯대.

청구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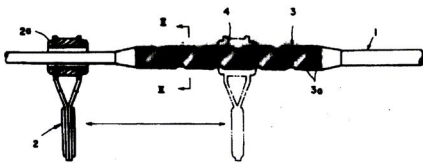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목부(4)가 나선형상의 볼록부(5)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싯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팽출부(3)에 축방향으로 뻗어 있는 복수의 널링 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싯대.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